총동문회회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회는 을지대학교 총동문회(이하 “본 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친화를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본 회의 사무소는 을지대학교 내에 두고 학과, 계열, 지역 및 단체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
2.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
3.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
4. 그 밖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제2장 회 원

제5조(회원자격) 본 회는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정회원
   가. 모교를 졸업한자(학부, 서울보건대학, 을지의과대학 졸업자)
   나. 모교의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
   다. 모교의 대학원이나 부설교육기관의 정규과정 또는 연구과정에서 정해진 과정을 수료한 자
2. 준회원
   가. 상기 제1항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
3. 특별회원
   가. 모교의 교직원과 교직원이었던 자
   나. 본 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

제6조(권리와 의무)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

1. 정회원은 정해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2. 모든 회원은 본 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.
3.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제규정 준수, 결정사항준수, 행사참가 및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.

제3장 임　　원

제7조(임원)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회 장　　1명
2. 수석부회장　1명
3. 부회장　　약간명
4. 이 사　　200명 이내
5. 감 사　　2명

제8조(고문과 자문위원) ① 본 회에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며,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 한다.

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, 본 회의 각급회의에 참석, 발언할 수 있다.

제9조(회장)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.

제10조(부회장)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, 졸업년도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회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에 따른다.

제11조(이사) 이사는 이사회의를 구성하며 본 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제12조(감사)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13조(임원의 선임)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.

1.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2.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3. 이사는 학과 동문회 및 지역동문회의의 추천을 받아 그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4.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제14조(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선거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4장 회　　의

제15조(정기총회)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정기총회는 2년 1회로 한다.
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
제16조(총회결정사항)

1. 본 회의 사무경과 보고에 관한 사항
2.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
3.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
4. 그 밖의 중요한 사항

제17조(총회의 의결) ① 총회는 출석위원으로 성회하며,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위임한다.

제18조(이사회)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.

1. 이사회는 고문, 자문위원, 회장, 부회장, 감사, 이사로 구성한다.
2. 정기 이사회는 1년 1회로 한다.
3. 임시 이사회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9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3.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
4. 고문, 자문위원, 부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6. 총회의 위임사항
7.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20조(이사회의 의결) 이사회는 출석이사로 성회하며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1조(위원회) ① 본 회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.

1. 총무위원회
2. 재무위원회
3. 문화위원회
4. 정보위원회
5. 장학 및 국제교류위원회

제22조(위원회의 직무) 각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총무위원회는 사업계획 기획 및 홍보, 회의, 인사, 문서, 서무, 관리 등 타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무 일체를 관장한다.
2. 재무위원회는 본회의 재무 전반에 관항 사항 및 각종 사업에 수반되는 재정업무를 관장한다.
3. 문회위원회는 회보 발행 및 학술연구에 따른 문화활동 업무를 관장한다.
4. 정보위원회는 동문들의 취업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5. 장학 및 국제교류위원회는 모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업무 및 세계 각지 자매대학 동문회와의 교류도모 및 외국 유학 동문의 친목도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제5장 사무처

제23조(사무처) ①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
② 사무처는 사무총장 1명, 차장 1명,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

직원을 지휘・감독한다.
④사무총장, 차장, 간사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장 산하조직

제24조(구성) ① 학부, 학과, 지역, 직능 등에 따라 본 회의 지부, 지회,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. 다만, 구성한 후 반드시 본 회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.
② 산하조직은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된 다음의 사항을 본 회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1. 임원
2. 회칙
3. 연도별 사업계획
4. 회원명단

제25조(활동) ① 산하 조직은 이 회칙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② 산하조직은 독자적으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본 회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장 재 정

제26조(재정) ① 본 회의 재정은 세입・세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.
②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1. 입회비
2. 연회비 및 임원회비
3. 특별기부금
4. 기타수입

제27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8조(회계보고)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.

제8장 상 벌

제29조(포상) 본 회 및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포상할 수 있다.

제30조(징계)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킨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제9장 기 타

제31조(운영세칙)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199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